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552

발의연월일: 2023. 1. 18.

발 의 자: 박성민·강민국·김성원

김형동 • 이만희 • 이명수

이헌승 • 전주혜 • 정우택

조은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장으로서 재난 발생 시 해당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 항을 총괄·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음.

그런데 4년마다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, 이에 따라 실제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교육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(이하 이 조에서 "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"이라 한다)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6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)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
	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에 관한 교육(이하 이 조에서 "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
	교육"이라 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한다.
	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
	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	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현황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.